

UNCITRAL 신속 중재의 도입과 전망*

Introduction and Prospects of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이춘원**

Lee, Choonwon

〈목 차〉

- I. 서론
- II.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채택과 구성
- III.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내용
- IV.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신속 중재
- 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 신속 중재 규칙, UNCITRAL의 중재 규칙, 단독 중재인의 임명, 명시적인 동의

* 이 논문은 2020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I. 서

중재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 여러 장점이 있으나 그중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신속성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선호되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재가 진행되는 현실을 보면 중재판정부가 결론을 내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 상공 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한다)의 경우 최대 2~3년이 소요되고 있다.¹⁾ 이처럼 중재 절차가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점이 없어짐에 따라 중재 절차가 수렁에 빠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²⁾ 분쟁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므로 신속한 중재를 구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중재기관은 통상의 중재 절차와 별개로 “신속한 중재(Expedited Arbitration)”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경미한 사건은 통상의 중재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신속 중재는 절차를 신속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중재절차와 다른 형태의 중재이다.³⁾ 신속 중재는 국내외 중재 절차에서 모두 필요하지만, 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재 사건에서 필요성 더욱 크므로 국제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중재를 위한 제도 확립이 되어왔다. 1992년 제노바상공회의소(Geneva Chamber of Commerce)에 의해 처음으로 신속 중재 절차가 도입된 이래로 많은 국제 중재 기관은 신속 중재 조항을 도입하였다.⁴⁾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라 한다),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이하 SCC라 한다), 홍콩 국제 중재 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라 한다),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라 한다) 및 국제 상공 회의소 등 각국의 중재 기관들도 일찍부터 국제 중재와 관련하여 신속 중재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 중재 규칙을 2011년 6월 개정하면서 신속 중재 규정을 도입하였다. 국제 중재 기관들도 신속 중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신속 중재 절차를 처음 도입한 주요 국제기관은 1994년 규칙 책자에

1) Gunawan Widjaja et al., “Fast Track Arbitration ; Comparative Analysis”, Proceedings of the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p. 43.

2) Hans Bagner, “Expedited Arbitration Rules: Stockholm and WIPO”, Arbitration International, Vol. 13 Iss. 2, 1 June 1997, p. 193.

3) 이는 민사소송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반소송과 별도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둔 것처럼 통상의 중재 절차와 별개로 신속한 중재 절차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4) Pierre-Yves Tschanz,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Geneva’s Arbitration Rules and their Expedited Procedu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0, Iss. 4 (1993) pp. 51.

‘WIPO 신속 중재 규칙(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이라는 섹션을 포함시킨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라 한다)이다.⁵⁾

국제 중재에 있어서 각국의 중재법 및 중재 기관 규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는 지난 몇 년 동안 신속 중재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국제기준이 될 수 있는 신속 중재의 입법적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1년 7월 9일 UNCITRAL은 신속 중재 규칙(2021 Expedited Arbitration Rules, 이하 EAR이라 한다)을 채택하였으며, 이 규칙은 동년 9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⁶⁾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단기간에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신속 중재 규칙은 중재 절차의 효율성과 적법 절차 및 공정한 대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제정과정과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전망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채택과 구성

1.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채택 과정

소액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빠르고 간소화된 중재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2018년 UNCITRAL 제51차 회의에서 긴급 중재와 관련된 문제 처리를 워킹그룹 2(UNCITRAL’s Working Group No. II)⁷⁾에 위임하였다.⁸⁾

칠레 Andrés Jana 의장하에 UNCITRAL 워킹그룹 2는 저비용과 신속한 중재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여 69차 회의(2019년 2월 4일부터 8일)부터 신속 중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며, COVID-19 pandemic으로 회의방식을 조정할 때까지 격년으로 비엔나와 뉴욕에서 상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신속 중재 규칙과 관련하여 70차(비엔나, 2019년 9월 23

5) Javier Tarjuelo, “Fast Track Procedures : A New Trend in Institu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Oct 2017, Vol. 11 Iss. 2, p. 106.

6) United Nations Information Service, “Entry into force of the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Rules”, Press Releases, 16 September 2021 (<https://unis.unvienna.org/unis/en/pressrels/2021/unis1321.html# / search day: 2022 1. 10>)

7) UNCITRAL 위원회는 매년 1회 뉴욕의 유엔 본부(짝수년)와 비엔나 국제 센터(홀수년)에서 번갈아 가며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에는 업무수행을 위해 6개의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재와 조정에 관한 사항은 워킹그룹 2에서 담당한다. 워킹그룹은 뉴욕과 빈에서 교대로 매년 1회 또는 2회 회기를 개최한다.

8)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even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17 (A/73/17), para. 252.

일부 27일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73차 회의(뉴욕, 2021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에서 논의가 일단락되어 승인을 받았다.⁹⁾ UNCITRAL의 심의 및 합의 기반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 또는 하이브리드 토론 형식에서의 전환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원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애초에 예상한 기간 내에 완료된 것은 대표단과 UNCITRAL 사무국의 헌신과 협력 및 연대 정신의 결과였었다고 한다.¹⁰⁾

처음의 논의는 신속 중재 규칙을 독립적인 규칙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UNCITRAL의 중재 규칙을 개정하여 신속 중재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었다. 논의 결과, UNCITRAL의 중재 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이하 UAR라 한다) 부속서로 채택하기로 결론지었다. 중재 절차 및 신속 중재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작업은 기간의 단축과 절차의 간소화로 설명되며 효율적인 비용과 시간 내에 분쟁의 최종적 해결 방법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중재 절차의 효율성,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 절차(due process) 및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를 위한 당사자의 권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1년 7월 9일 제54차 UNCITRAL 본회에서 마침내 신속 중재 규칙(EAR)을 채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UNCITRAL의 중재 규칙 제1조에 제5항도 함께 삽입하였다.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은 다른 신속 중재 규칙과 마찬가지로 주요 중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대표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측면에서 광범위한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UNCITRAL EAR는 UNCITRAL 중재 규칙의 특정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2021년 제54차 UNCITRAL 본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UAR 제16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없는 나머지 조문과 함께 채택함으로써 UNCITRAL 55년 역사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었다. 또한 UNCITRAL EAR에 대한 중요한 논평과 지침을 제공하는 EAR의 주석(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Expedited Rules, 이하 “Explanatory Note라 한다)를 승인하여 이에 대한 마무리 작업은 워킹그룹 2에 위임하였다.¹¹⁾ 이에 따라 Explanatory Note는 2021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된 UNCITRAL 워킹그룹 2의 74차 세션에서 마무리되었다. 다수의 상사 중재 기관이 이미 신속 중재에 관한 절차 규칙을 채택하였고 그러한 절차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UNCITRAL의 EAR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9) A/CN.9/1049, paras. 14 - 66.

10) UNCITRAL의 관리 기구인 위원회의 세션에서 대표자들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강조되었다 (<http://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1/07/14/uncitral-expedited/> serch day : 2022. 1. 10).

11) A/CN.9/1049, para. 66.

2.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구성 및 특징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은 16개 조문으로 2021 UNCITRAL 중재 규칙의 부록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 중재규칙 제1조에 5항을 추가하여 “부록의 EAR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중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EAR은 제1조와 제2조는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에 관한 것이고, 제3조는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행동(Conduct of the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제4조는 중재 통지 및 청구 진술서(Notice of arbitration and statement of claim), 제5조는 중재 통지 및 방어 진술에 대한 응답(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and statement of defence), 제6조는 권한 지정 및 임명(Designating and appointing authorities), 제7조는 중재인의 수(Number of arbitrators), 제8조는 단독 중재인의 임명(Appointment of a sole arbitrator), 제9조는 당사자와의 협의(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제10조는 기간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재량(Discre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ith regard to periods of time), 제11조는 청문회(Hearings), 제12조는 상계를 위한 반소 또는 청구(Counterclaims or claims for the purpose of set off), 제13조는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한 수정 및 보완(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a claim or defence), 제14조는 추가 서면 진술(Further written statements), 제15조는 증거(Evidence), 제16조는 판정기간(Period of time for making the award)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부록 텍스트로 계약에 대한 모범 중재 조항과 모범 선서를 제시하고 있다.

신속 중재는 주로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소규모이고 복잡하지 않은 분쟁을 단독 중재인이 직접 심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신속 중재 절차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문절차가 열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문절차 없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일정한 기간 내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 수수료도 통상의 중재 절차보다 적으며 전체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다수의 중재기관이 신속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으로 한도로 하여 그 이하인 경우만 신속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ICC 규정은 분쟁 금액이 중재 합의 날짜에 따라 미화 2백만 달러 또는 미화 3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신속 중재 절차가 적용되며,¹²⁾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이라 한다) 중재 규칙에서는 500만 위안,¹³⁾ 스위스 국제중재규칙(Swiss Rul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서는 1,000,000

12) 중재 합의가 2017년 3월 1일 이후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는 분쟁 금액이 US \$2,0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중재 합의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는 분쟁 금액이 US \$3,0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expedited-procedure-provisions/> seach day 2022. 1. 10.)

스위스 프랑,¹⁴⁾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 ICDR 라 한다) 중재 규칙에서는 500,000 USD¹⁵⁾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UNCITRAL 신속 중재 절차는 금액상 제한을 두지 않고, 당사자가 신속 중재 절차에 동의하면 개시된다. 동의는 분쟁 발생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

다른 중재기관의 신속 중재 규칙처럼 UNCITRAL 신속 중재 규정에서도 달리 합의가 없으면 단독 중재인에 의해 진행되며, 당사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심리 없이 판정할 수 있다.

SCC 중재 규칙은 표준 중재 규칙과 신속 중재 규칙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¹⁶⁾ 당사자가 신속 중재 규칙 또는 표준 중재 규칙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UNCITRAL EAR은 UNCITRAL 중재 규칙의 부속서로 되어 있어 EAR에 의해 신속 중재 절차가 진행 중에도 일반 중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UNCITRAL 중재 규칙은 UNCITRAL EAR로 보완되거나 대체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UNCITRAL EAR이 우선한다. 따라서 UNCITRAL EA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UNCITRAL 중재 규칙과 함께 읽고 해석하여야 한다.

Ⅲ. UNCITRAL 신속 중재 규칙의 내용

1. EAR의 적용

UNCITRAL EAR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UNCITRAL EAR 제1조에서 EAR이 적용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UAR 제1조 제5항에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신속 규칙이 중재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¹⁷⁾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며, 당사자는 분쟁 발생 전에 합의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EAR의 적용을 동의할 수 있다.¹⁸⁾ 분쟁을 EAR에 따라 신속 중재에 회부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당사자는 “분쟁 해결의 시급성, 거래의 복잡성과 관련된 당사자의 수, 예상되는 분쟁의 복잡성, 예상되는 분쟁 금액, 예상

13) Art. 56 (1) CIETAC Arbitration Rules 2015.

14) Art. 42 (1) (b) Swiss Rules 2021.

15) Art. 1 (4) ICDR Rules 2021.

16) <https://sccinstitute.com/our-services/expedited-arbitration/> search day 2022.1.10.

17)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2.

18) A/CN.9/1010, para. 24.

되는 중재 비용에 비례하여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 결합 또는 통합의 가능성, EAR 제16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⁹⁾

EAR 발효일 이전에 중재 계약을 체결했거나 UAR에 따라 중재를 시작한 당사자도 EAR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²⁰⁾ 당사자는 EAR을 중재에 적용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도 있으나,²¹⁾ 통상의 중재에서 신속 중재로 변경할 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²²⁾ 예컨대 UAR 제3조에 따라 전달된 중재 통지는 EAR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통상의 중재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EAR에 따른 신속 중재를 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중재판정부가 UAR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중재판정부를 3인으로 유지할 것인지²³⁾ 아니면 제8조²⁴⁾에 따라 중재판정부 구성을 변경에 대한 고려 및 중재판정부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가 이전 판정부에 제출된 진술 및 증거의 유지도 고려해야 한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EAR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견해를 들어 EAR의 적용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EA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대로 유지되며 UAR에 따라 중재를 수행한다.²⁵⁾

UAR과 UNCITRAL EAR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UNCITRAL EAR 제1조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속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 UNCITRAL 조항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UAR 제3조(Notice of arbitration) 제4항 (a), (b),²⁶⁾ 제6조(Designating and appointing authorities) 제2항,²⁷⁾ 제7조(Number of arbitrators),²⁸⁾ 제8조 제1항(Appointment

19)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93.

20) A/CN.9/1003, para. 31.

21) A/CN.9/1043, para 18.

22) A/CN.9/1010, para. 32

23) 제7조에서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1명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하면 중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

24) 단독 중재인의 임명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 (1) 단독 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명한다. (2) 모든 다른 당사자의 제안이 접수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단독 중재인 선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으로 UAR 제8(2)조에 따라 지정 기관에 의해 단독 중재인이 선정된다.

25) Art. 2 UNCITRAL EAR.

26) Article 3 (4) The notice of arbitration may also include: (a) A proposal for the designation of an appointing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1; (b) A proposal for the appointment of a sole arbitrator referred to in article 8, paragraph 1;

27) Article 6 (2) If all parties have not agreed on the choice of an appointing authority within 30 days after a proposal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has been received by all other parties, any party may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PCA to designate the appointing authority.

28) Article 7 (1) If the parties have not previously agreed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and if within 30 days after the receipt by the respondent of the notice of arbitration the parties have not agreed that there shall be only one arbitrator, three arbitrators shall be appointed.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f no other parties have responded to a party's proposal to appoint a sole arbitrator within the time limit provided for in paragraph 1 and the party or parties concerned have failed to appoint a second arbitrato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r 10,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appoint a sole arbitrator pursuant to

of arbitrators),²⁹⁾ 제20조(Statement of claim) 제1항 첫째 문장,³⁰⁾ 제21조(Statement of defence) 제1항 및 제3항,³¹⁾ 제22조(Amendments to the claim or defence),³²⁾ 제27조(Evidence) 제2항³³⁾의 둘째 문장이다.

2. 답변 기간의 단축 등

신속 중재의 신청은 EAR 제4조에 따라 ‘(a)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임명 기관의 지정 제안과 (b) 중재인 임명 제안’을 포함하여,³⁴⁾ 중재 통지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할 때 신청인의 주장 진술도 전달하여야 한다.³⁵⁾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즉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중재 통지서와 신청 명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³⁶⁾

피신청인은 EAR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재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며, EAR 제4조 제1항 ‘(a) 임명 기관의 지정 제안 (b) 중재인 임명 제안’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야 한다. EAR 제5조 제1항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중재 통지에 대한 답변 제출을 위한 30일의 기간을 둔 UAR 제4조 제1항을 수정하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article 8, paragraph 2, if it determines that, in view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is is more appropriate.

- 29) Article 8 (1) If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a sole arbitrator is to be appointed and if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by all other parties of a proposal for the appointment of a sole arbitrator the parties have not reached agreement thereon, a sole arbitrator shall, at the request of a party, be appointed by the appointing authority.
- 30) Article 20 (1) The claimant shall communicate its statement of claim in writing to the respondent and to each of the arbitrators within a period of time to be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claimant may elect to treat its notice of arbit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 as a statement of claim, provided that the notice of arbitration als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2 to 4 of this article.
- 31) Article 21 (1) The respondent shall communicate its statement of defence in writing to the claimant and to each of the arbitrators within a period of time to be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respondent may elect to treat its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as a statement of defence, provided that the response to the notice of arbitration also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3) In its statement of defence, or at a later stage in the arbitral proceedings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delay was justifi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respondent may make a counterclaim or rely on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provid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jurisdiction over it.
- 32) Article 22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 party may amend or supplement its claim or defence, including a counterclaim 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s it inappropriate to allow such amendment or supplement having regard to the delay in making it or prejudice to other parties or any other circumstances. However, a claim or defence, including a counterclaim 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may not be amended or supplemented in such a manner that the amended or supplemented claim or defence fall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 33) Article 27 (2) Witnesses, including expert witnesses, who are presented by the parties to testify to the arbitral tribunal on any issue of fact or expertise may be any individual, notwithstanding that the individual is a party to the arbitration or in any way related to a party.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tatements by witnesses, including expert witnesses, may be presented in writing and signed by them.
- 34) Art. 4 (1) UNCITRAL EAR.
- 35) Art. 4 (2) UNCITRAL EAR.
- 36) Art. 4 (3) UNCITRAL EAR.

여 기간을 반으로 단축하고 있다.

EAR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변론을 신청인과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UAR 제21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기간 내에 답변 진술을 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속한 중재를 위해 15일의 기간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EAR 제10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AR 제12조에서는 반소 또는 상계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반소 또는 상계를 위한 청구는 중재판정부가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늦어도 방어진술서에서 제기되어야 하며³⁷⁾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지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한 피신청인은 중재 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 상계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없도록³⁸⁾ 피신청인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UAR 제21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상황에 따라 지연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중재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상계를 목적으로 반소를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³⁹⁾ 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3.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추가 제출

UAR 제22조는 중재판정부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반대 청구 또는 상계를 위한 청구를 포함하여 자신의 청구 또는 방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⁴⁰⁾ 하고 있다.

그러나 EAR 제13조는⁴¹⁾ 중재판정부가 수정 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반소 또는 상계를 위한 청구를 포함하여 자신의 청구 또는

37) Art. 12 (1) UNCITRAL EAR.

38) Art. 12 (2) UNCITRAL EAR.

39) UAR Article 21 (3) In its statement of defence, or at a later stage in the arbitral proceedings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delay was justifi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respondent may make a counterclaim or rely on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provid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jurisdiction over it.

40) UAR Article 22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 party may amend or supplement its claim or defence, including a counterclaim 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s it inappropriate to allow such amendment or supplement having regard to the delay in making it or prejudice to other parties or any other circumstances. However, a claim or defence, including a counterclaim 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may not be amended or supplemented in such a manner that the amended or supplemented claim or defence fall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41) EAR Article 13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 party may not amend or supplement its claim or defence, including a counterclaim 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unless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s it appropriate to allow such amendment or supplement having regard to when it is requested or prejudice to other parties or any other circumstances. However, a claim or defence, including a counterclaim or a claim for the purpose of a set-off, may not be amended or supplemented in such a manner that the amended or supplemented claim or defence fall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방어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도록 한다.

UNCITRAL 중재 규칙 2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 또는 방어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EAR 제1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UNCITRAL 중재 규칙 22조보다 EAR 제13조에서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양자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0.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반소 및 수정 사항으로 신속 규칙은 더 이상 분쟁 해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하거나 EAR 제2조에 따라 EAR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⁴²⁾

UAR 제24조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청구진술서 및 항변진술서 외에 당사자에게 요구되거나 당사자가 제시할 수 있는 추가 서면 진술을 결정하고 그러한 진술을 전달하는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⁴³⁾

EAR 제14조⁴⁴⁾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후, 청구 진술서 및 항변 진술서 이후에 당사자들의 추가 서면 진술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다. EAR 제14조는 UAR의 제24조에 따라 추가 서면 진술을 제한하는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있다. EAR 제14조는 중재판정부는 청구진술서와 항변진술서로 충분하고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서면 진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⁴⁵⁾

이것은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분쟁이 복잡하여 다수의 진술이 필요한 통상의 중재에 비해, 신속 중재에서는 한 번의 제출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2)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0. Counterclaims and amendments might result in the expedited arbitration no longer being appropriate for resolving the dispute. In such a circumstance, parties may agree that that the Expedited Rules shall no longer apply to the arbitration or a party may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that the Expedited Rules shall no longer app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A/CN.9/1010, para. 100).

43) UAR Article 24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which further written statements, in addition to the statement of claim and the statement of defence, shall be required from the parties or may be presented by them and shall fix the periods of time for communicating such statements.

44) EAR Article 14 The arbitral tribunal may, after inviting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decide whether any further written statement shall be required from the parties or may be presented by them.

45)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1. Article 14 reinforces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under article 24 of the UARs to limit further written statements (A/CN.9/1010, para. 102). It clarifi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decide that the statement of claim and the statement of defence are sufficient and that no further written statements are required from the parties. It should, however, not be interpret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does not have such discretion under article 24 of the UARs.

4. 중재인의 임명과 수

통상의 중재에서는 UAR 제7조 1항에 따라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3인이 된다. 즉,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해 미리 합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중재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이 1명뿐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3인의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신속 중재에서는 EAR 제7조에 따라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EAR 제8조 1항에 의해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1명이 된다. 신속 중재에서는 통상의 중재에서보다 중재인의 수가 적으므로 중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EAR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 모두가 제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단독 중재인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이든 지정 기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인은 UAR 제8조 제2항46)에 따라 지정 기관에 의해 선정된다.

EAR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당사자 모두가 임명 기관의 지정에 대한 제안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선택에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누구든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이하 PCA라고 한다) 사무총장에게 지명권자를 지정하거나 지명권자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AR 제6조는 UAR 제6조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UAR 제6조 제2항에서는 제안이 다른 당사자에게 도달한 후 당사자가 PCA 사무총장에게 임명권자의 지정을 요청할 때까지 30일간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UAR에서는 사무총장이 임명권자를 지정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사무총장에게 임명권자로서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5. 절차의 신속한 수행 및 증거절차

EAR 제3조에서 당사자와 중재판정부는 조치 및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원격 심리를 포함한 기술적인 수단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⁴⁷⁾

46) UAR Article 8 (2)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appoint the sole arbitrator as promptly as possible. In making the appointment,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use the following list-procedure, unless the parties agree that the list-procedure should not be used or unless the appointing authority determines in its discretion that the use of the list-procedure is not appropriate for the case: (a)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communicate to each of the parties an identical list containing at least three names; (b) Within 15 days after the receipt of this list, each party may return the list to the appointing authority after having deleted the name or names to which it objects and numbered the remaining names on the list in the order of its preference; (c) After the expiration of the above period of time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appoint the sole arbitrator from among the names approved on the lists returned to it and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preference indicated by the parties; (d) If for any reason the appointment cannot be made according to this procedure,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exercise its discretion in appointing the sole arbitrator.

47) EAR Article 3 (1) The parties shall act expeditiously throughout the proceedings. (2) The arbitral tribunal

EAR 제9조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 후 15일 이내 사건 관리 회의 등을 통해 중재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EAR 제10조에서는 EAR 16조에 따라 중재 재판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UAR 및 EAR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AR 제11조⁴⁸⁾에서는 당사자의 청문회 개최 요청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통상의 중재 절차에서도 UAR 제17조 3항⁴⁹⁾에 따라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속하지 않은 중재의 경우에는 구두 심리가 열린다.

EAR 제15조 제1항⁵⁰⁾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에 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 증거물 또는 기타 증거를 결정’하고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문서 제출 절차를 확립하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EAR 제15조 제2항⁵¹⁾의 서면으로 증인의 진술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UAR 제27조 2항⁵²⁾과 동일한 내용이다.

6. 중재 판정

EAR 초안 작성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이 중재 판정 기한을 제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워킹그룹 2는 54차 세션에서 이 점에 대해서 뉴욕 협약(The New York Convention)으로 잘 알려진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을 통하여 신속한 프로세스를 통한 정책적 이익과 해당 프로세스의 결과가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6시간

shall conduct the proceedings expeditiousl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parties agreed to refer their dispute to expedited arbitration and the time frames in the Expedited Rules. (3) The arbitral tribunal may, after inviting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utilize any technological mean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to conduct the proceedings, including to communicate with the parties and to hold consultations and hearings remotely.

48) EAR Article 11 The arbitral tribunal may, after inviting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and in the absence of a request to hold hearings, decide that hearings shall not be held.

49) UAR Article 17 (3) If at an appropriate stage of the proceedings any party so request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old hearings for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by witnesses, including expert witnesses, or for oral argument. In the absence of such a reques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to hold such hearings or whether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50) EAR Article 15 (1) The arbitral tribunal may decide which documents, exhibits or other evidence the parties should produce. The arbitral tribunal may reject any request, unless made by all parties, to establish a procedure whereby each party can request another party to produce documents.

51) EAR Article 15 (2)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tatements by witnesses, including expert witnesses, shall be presented in writing and signed by them.

52) UAR Article 27 (2) ---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tatements by witnesses, including expert witnesses, may be presented in writing and signed by them.

이상 토론을 하였다.⁵³⁾

결론적으로 UAR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하여, 신속 중재는 EAR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⁵⁴⁾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⁵⁵⁾ EAR 제16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중재판정부는 6개월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총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⁵⁶⁾ EAR 제10조에서 EAR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량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였으나, EAR 제16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판정을 위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특정 관할권에서 기간 연장은 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 이외의 기관이 동의 또는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⁵⁸⁾

EAR 제16조 제2항에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9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은 단기간에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고려한 것이다.⁵⁹⁾

당사자와 중재판정부는 9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가 종료되거나 해당 기간 이후에 내려진 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9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경고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9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합의할 수 있다.⁶⁰⁾

이러한 내용을 제16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최종 연장된 기한을 제안해야 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이 연장기한이 채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연장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EAR이 중재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재판정부는 EAR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계속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⁶²⁾

53) Mylene Chan, "UNCITRAL Adopts Expedited Arbitration Rules", The CPR Institute, 29 July 2021.

(<https://blog.cpradr.org/2021/07/29/uncitral-adopts-expedited-arbitration-rules/> search day: 2022 1. 11).

54) 당사자들은 판정 기한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4.).

55) EAR Article 16 (1) The award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56) EAR Article 16 (2) The arbitral tribunal ma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after inviting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extend the period of tim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extended period of time shall not exceed a total of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57) A/CN.9/1003, para. 106; A/CN.9/1010, para. 117.

58) A/CN.9/1003, para. 107; A/CN.9/1010, para. 120.

59)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7.

60)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8.

61) EAR Article 16 (3) If the arbitral tribunal concludes that it is at risk of not rendering an award within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it shall propose a final extended time limit, state the reasons for the proposal, and invite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within a fixed period of time. The extension shall be adopted only if all parties express their agreement to the proposal within the fixed period of time.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중재 절차나 판정을 지연시키고 기간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유용하다. 중재판정부는 9개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EAR이 더 이상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9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EAR이 중재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절차는 계속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일로부터 9개월 후에도 판정을 내릴 수 있다.⁶³⁾

당사자들이 판정이유를 생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UAR 제34조 제3항에 따라 판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판정에 명시해야 한다.⁶⁴⁾ 중재판정부에 합리적인 판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게 고려되었고 판정이 내려진 근거를 알게 되므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⁶⁵⁾ 다만, 판정에 이유가 없더라도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IV.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신속 중재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는 1912년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년 3월 18일 제정, 동년 4월 1일 시행) 제1조 제13호에 의하여 일본 민사소송법(제8편 중재절차)이 적용된 때부터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후 국제무역확대에 따라 교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분쟁 사건이 증가 되어 수출진흥을 위하여 국제분쟁(무역클레임)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3월 16일 중재법(법률 제1767호)을 제정·공포하였다.⁶⁶⁾ 동 법률은 수출증대정책에 따라 무역분쟁으로 인한 상사 중재 건수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무역에 관한 주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협회)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상사 중재를 공정,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역의 신용성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며 아울러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제정한 목적이다.

62) EAR Article 16 (4) If there is no agreement to the extension in paragraph 3, any party may make a request that the Expedited Rules no longer apply to the arbitration. After inviting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views, the arbitral tribunal may determine to continue to conduct the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63)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88.

64) Draft Explanatory Note to the UNCITRAL EAR I. 90.

65) A/CN.9/969, paras. 85 - 86; A/CN.9/1003, para. 110; A/CN.9/1010, para. 121.

66) 대한상사중재원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반, “우리나라 중재법과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권(1991. 12.), p. 172.

한편 UNCITRAL은 1985년 6월 21일에 표준 국제 상사 중재법을 공식 채택함과 동시에 동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써 동 법률을 각국이 이용토록 권장하였다. 1986년 6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UNCITRAL 표준 국제 상사 중재법을 국내법규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⁶⁷⁾

우리나라도 1999년 12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중재법(법률 제6083호)의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야기되는 국내외 상사분쟁을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중재법은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선진 입법 예를 적극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중재법이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는 준거법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우리 중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중재제도의 발전과 그 이용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UNCITRAL 표준 국제 상사 중재법을 수용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규칙에서는 1989년에 개정에서 신속중재절차를 도입하였으나, 국제 중재 규칙에서는 2011년 개정에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2016년 국제 중재 규칙 개정에서 전자적 수단, 중재인 지명 및 확인제도, 당사자 추가제도, 긴급중재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신속 중재 절차와 청구의 병합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중재 규칙의 신속 중재 절차의 내용은 (1) 1인의 단독 중재인에 의한 중재, (2) 1회의 구술심리 원칙, (3) 소규모 분쟁에 대한 서면심리 원칙, (4) 판정 기한 단축과 판정이유의 간소화 등이다.⁶⁸⁾ 대체로 UNCITRAL 신속 중재절차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미세한 차이는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향후 UNCITRAL 신속 중재 절차를 기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어

Queen Mary University에서 행한 2021년 국제 중재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중재가 점점 형식화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할 때 기대했던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은 드물다고 하였다.⁶⁹⁾ 특히 금액이 적고 단순한 국제무역 분쟁에서

67) Paterson, Robert K., “Forging A New Judicial Attitud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anada; the UNCITRAL Model Law in Canadian Court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7(1), pp. 33.

68)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2018.

69)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 &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는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신속 중재 절차는 이러한 수요에 환영할만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신속 중재에 대한 SCC 규칙, ICC 신속 절차 조항, 신속 절차 및 긴급 중재에 대한 SIAC 규칙 등 여러 중재기관에서 이에 맞는 간소화된 중재 절차 지침을 만들었다. UNCITRAL 워킹그룹 2에서도 “중재를 통한 단순하고 가치가 낮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요구의 증가”와 “이러한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의 부족”에 따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 개발이 필요하여, 2021 UNCITRAL EAR을 채택하게 되었다. 2021년 9월 19일에 발효된 UNCITRAL EAR에 의한 신속 중재 절차는 간소화된 중재 절차로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신속 중재는 중재의 틀 안에서 중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이므로 신속 중재 절차에서도 중재의 기본적인 속성과 적법 절차 및 공정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중재 판정의 효력 역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UNCITRAL의 관련 논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EAR의 입법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신속 중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른 중재와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은 간소화된 절차와 촉박한 기한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UNCITRAL EAR은 이미 신속 절차 규칙에 채택한 주요 중재기관의 예에 따라 이해 당사자에게 균형 잡히고 효율적인 규칙을 제공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인 중재 절차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UNCITRAL EAR은 당사자들의 협의를 위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중재판정부에 강력한 관리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 신속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필요한 상황에서, UNCITRAL EAR은 신속 중재에 관한 개별국가 및 중재기관의 모범적 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대한상사중재원, 2016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2018.
- 대한상사중재원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반, “우리나라 중재법과 UNCITRAL 표준국제상사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1권(1991. 12.)
- Gunawan Widjaja & Andryawan & Victoria Regine Liando, “Fast Track Arbitration ; Comparative Analysis”, Proceedings of the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ADRIC 2019).
- Hans Bagner, “Expedited Arbitration Rules: Stockholm and WIPO”, Arbitration International, 13(2).
- Javier Tarjuelo, “Fast Track Procedures : A New Trend in Institutional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11(2).
- Mylene Chan, “UNCITRAL Adopts Expedited Arbitration Rules”, The CPR Institute, 29 July 2021.(<https://blog.cpradr.org/2021/07/29/uncitral-adopts-expedited-arbitration-rules/> search day: 2022 1. 11).
-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even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17 (A/73/17).
- Paterson, Robert K., “Forging A New Judicial Attitude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anada; the UNCITRAL Model Law in Canadian Court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7(1).
- Pierre-Yves Tschanz,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Geneva’s Arbitration Rules and their Expedited Procedu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0(4) 1993.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21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 &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United Nations Information Service, “Entry into force of the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Rules”, Press Releases, 16 September 2021 (<https://unis.unvienna.org/unis/en/pressrels/2021/unisl321.html#> / search day: 2022. 1. 10)

ABSTRACT

Introduction and Prospects of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Lee, Choonwon

The modern arbitration practice recognises the need for a faster and simplified procedur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isputes with fairly low amounts at stake. This has driven several institutions to expand their offer of procedural guidelines with a simplified set of rules that would fit this purpose. Expedited arbitration is increasingly used by parties and is growing in popularity. The basic idea behind establishing expedited arbitration rules is to create the possibility for the parties to a dispute to agree on a simplified and streamlined procedure and to have an arbitration award issued within a short period. The associated cost savings for the parties is another benefi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rules for expedited dispute resolution has recently also been considered by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 in light of the “increasing demand to resolve simple, low-value cases by arbitration” and “the lack of international mechanisms cope with such disputes.” As a result, the UNCITRAL 2021 Expedited Arbitration Rules (UNCITRAL EAR) took effect on September 19, 2021. The EAR was adopted by the Commission on 21 July 2021 and, next to UNCITRAL’s well-known instruments like the Arbitration Rules (UAR) and the Model Law, represent another chapter in the Commission’s impactful wor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all, the UNCITRAL EAR has great potential to meet the need for more flexible and efficient arbitration proceedings, primarily because they provide the tribunal with strong managerial powers while still leaving room for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However, parties must remember that not all disputes may be suitable for expedited arbitration, and disputes that are complex or have the possibility of being joint or consolidated may not benefit from simplified procedures and tight deadlines. This article will outline the cor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CITRAL EAR.

Key Words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Expedited Arbitration Rules, UNCITRAL Arbitration Rules, Appointment of a sole arbitrator, express consent